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2
----------	------

발의연월일 : 2020. 7. 6.

발 의 자 : 송옥주 · 유동수 · 임종성
안호영 · 박용진 · 정춘숙
박 정 · 김영주 · 서삼석
이수진(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들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로 확
대하고 법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개발행위를 포
함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추정을 배제하
기 위하여는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안 제9조).
-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3조제2항제3호 신설).
- 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
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정보 제공, 관련 시설·장비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 마. 환경단체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 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
제3항 삭제).
- 사. 환경부장관이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운영으로”를 “운영 등 개발행위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을 각각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시설”을 “시설 및 개발행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운영으로부터”를 “운영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과”를 “운영 등 개발행위와”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운영과”를 “운영 등 개발행위와”로, “해당 시설의”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 운영”을 “시설 운영 등 개발행위의”로,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를 “시설 운영 등 개발행위를 하였던 사업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을 “시설 등 개발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에”를 “시설 등 개발행위에”로, “운영과”를 “운영 등 개발행위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설에서”를 “시설 등에서”로, “시설의 사업자”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을 “시설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자의 시설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설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때는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추정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운영”을 “운영 등 개발행위”로, “시설의 사업자”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 등”을 “운영 등 개발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을 “운영 등 개발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에”를 “운영 등 개발행위에”로, “운영을”을 “운영 또는 무리한 개발행위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시설”을 “시설 등 개발행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설의 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규명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조사단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
2. 사업장 등 관련 장소 출입 및 시설·장비 점검

제2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등을 대리하여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3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 확립을 위하여 환경오염 피해의 위해성, 피해등급의 기준, 구제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과관계 추정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u>운영</u>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p> <p>2. ~ 9. (생략)</p> <p>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u>시설</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시설</u>을 말한다.</p> <p>1. ~ 10. (생략)</p> <p>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p>	<p>제2조(정의) ----- -----.</p> <p>1. ----- -----<u>운영 등 개발행위로</u>----- ----- ----- ----- ----- ----- ----- ----- ----- ----- ----- -----.</p> <p>2. ~ 9.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대상) ----- -----<u>시설 등</u>----- -----<u>시설 등</u>-----.</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p>

는 시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
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② (생략)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
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

---시설 및 개발행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① -----운영 등
개발행위와-----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
-----운영 등 개발행위와-----

-----해당-----

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

--.

② -----시설 운영 등 개발행위의-----

-----시설 운영 등 개발행위를 하였던 사업자-----
-----.

제7조(배상책임한도) -----

-----시설 등 개발행위-----

--.

1. (현행과 같음)
2. -----
-----시설 등 개발행위에-----
-----운영 등 개발행위와-----

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①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지역의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3.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① 시설 등에서-----
-----사업자-----

-----.

② -----시설 등-----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사업자의 시설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설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때는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생략)

<신설>

제11조(구상권) ①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추정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구상권) ① -----
-----운영 등 개발행위-----

사업자-----.

② -----
--운영 등 개발행위-----

-----.

제12조(책임의 배분)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

제12조(책임의 배분) ① -----

-----운영 등 개발행위-----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

등 개발행위에-----

-----운영 또

는 무리한 개발행위를-----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시설

등 개발행위-----

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1. 2. (생략)

<신 설>

제15조(정보청구권) ① -----

-----사업
자-----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
·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3. (생략)

③·④ (생략)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규명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조사단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 ⑤ (생략)
<신설>

⑥ (생략)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② (생략)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

1.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
2. 사업장 등 관련 장소 출입 및 시설·장비 점검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등을 대리하여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
지할 수 있다.

제40조(학술조사·연구 등) ① ~

④ (생략)

<신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
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연
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40조(학술조사·연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실효적인 피
해구제 제도 확립을 위하여 환
경오염피해의 위해성, 피해등급
의 기준, 구제급여 지급 및 사
후관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⑥ -----제
5항-----

--.